

사업재편및지배력강화사례연습

DA 5 김양태



주요 그룹사의 분할 사례

지배구조 개선 및 사업 재편을 위하여 다수의 회사들은 분할/분할합병 실시.

주요 회사의 사업재편 사례

분할기일	피분할회사	신설회사	분할 유형	분할 목적
2014.04.23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밥캣홀딩스	물적분할	재무구조 개선
2014.09.12	SK가스	에스케이어드밴스드	물적분할	사업전문성 강화
2015.06.30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홀딩스에 흡수합병	분할합병 (인적분할)	지배구조 개편
2016.05.31	한화큐셀	한화큐셀코리아에 흡수합병	분할합병 (물적분할)	사업전문성 강화
2017.03.01	크라운제과	크라운제과	인적분할	지배구조 개편
2017.03.01	포스코피앤에스	포스코대우에 흡수합병	분할합병 (인적분할)	사업전문성 강화
2017.04.01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등	인적분할	사업전문성 강화
2017.04.01	SK해운	SK해운	물적분할	재무구조 개선
2017.05.01	매일유업	매일유업	인적분할	지배구조 개편
2017.06.01	오리온	오리온	인적분할	지배구조 개편
2017.10.01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지주에 흡수합병	분할합병 (인적분할)	지배구조 개편
2017.11.01	롯데아이티테크	롯데정보통신	물적분할	사업전문성 강화
2017.12.01	SK케미칼	SK케미칼	인적분할	지배구조 개편
2018.04.01	롯데상사, 롯데 지알에스	롯데지주에 흡수합병	분할합병 (인적분할)	지배구조 개편
2018.07.01 (철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 흡수합병	분할합병 (인적분할)	지배구조 개편
2018.11.01 (철회)	네이버	네이버웹툰에 흡수합병	분할합병 (물적분할)	사업전문성 강화

1) 국내 주요회사의 분할 목적은 "지배구조 개선"...

인적분할은 지주사 전환 및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분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적분할은 지분매각, 사업전문성 강화 목적이 다수임. 2018년 롯데 그룹, 신성이앤지 세아제강등이 분할을 실시하였으며, 모비스, 네이버는 분할 공시후 철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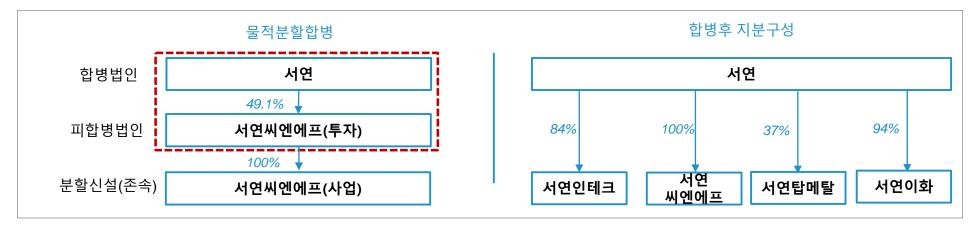
상장사의 물적분할합병 Case는 극소수임. 이는 물적분할 사유가 대부분 지분매각, 사업전문성 강화이므로 굳이 물적분할을 할 실익이 없었고, 주식매수청구권으로 거래가 무산될 Risk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Case 1. 물적분할합병

물적분할합병과 소규모 합병의 주요 Case.

(주) 서연의 물적분할합병



서연씨엔에프 물적분할후 합병을 통하여 지주사행위제한 요건 위반 해소 및 대주주 지분율 강화.

- 2016년 10월: 서연씨엔에프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사업법인은 존속하고, 투자법인은 서연에 흡수합병
- 물적분할합병비율: 자본시장법에 따른 비율

서연씨엔에프(투자)- 비상장사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본질가치 평가,

서연- 상장사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가(주가) 평가

• 소규모합병(합병신주가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 10%를 초과하지 않음)으로 진행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사회결의로 갈음함.

Point 1. 상장사의 분할/합병시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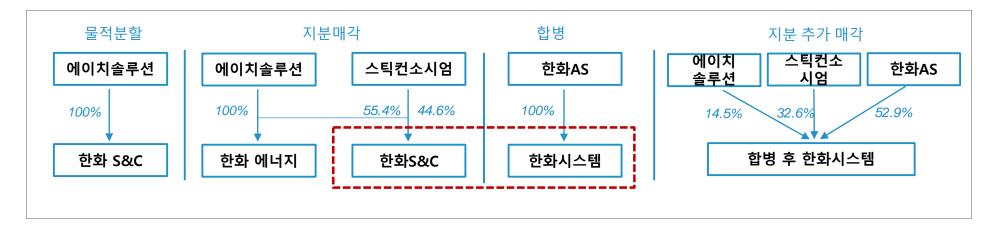
Point 2.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물적분할합병을 이용(단,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Case 2. 분할 후 합병

분할 후 합병의 주요 Case.

한화 S&C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피하기 위하여, 분할/지분매각/합병 등을 실행함.

- [Step1] 2017년 10월: 에이치 솔루션에서 한화 S&C(SI 사업부) 물적분할
- [Step2] 2017년 10월: 한화 S&C의 지분일부 매각(스틱컨소시엄-44.6%를 2500억원
- [Step3] 2018년 8월:한화시스템의 한화 S&C 흡수합병- 합병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1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
- [Step4] 2018년 8월: 한화시스템 지분을 스틱컨소시엄에 추가로 매각.

Point 1. FI를 활용한 사업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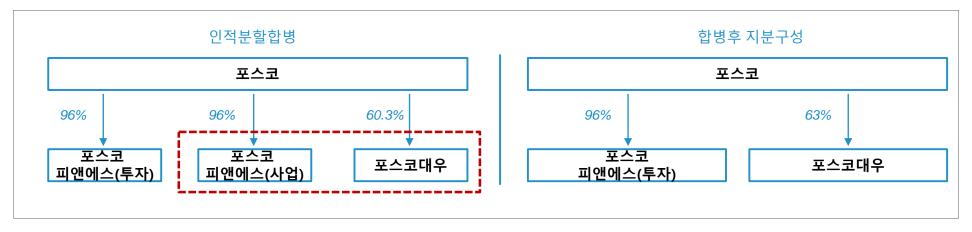
Point 2.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지분매각시점과의 차이로 합병비율 산정은 "상증법상 가치" 적용



Case 3. 인적분할합병

인적분할합병의 주요 Case.

포스코피앤에스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회사 사업수행능력 강화.

- 2016년 3월: 포스코피앤에스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사업부문은 포스코대우에 흡수합병 실시
- 인적분할비율: 순자산가액 비율
- 합병비율: 포스코피앤에스(사업)- 비상장사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본질가치 평가, 포스코대우- 상장사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가(주가) 평가
- 소규모합병(합병회사의 신주발행비율이 전체주식수의 10% 미만)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포스코피앤에스 사업부문을 최소화하여 분할함.(소규모합병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사회결의로 갈음함)

Point 1. 상장사의 분할/합병시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를 이용

Point 2.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계약 무산을 막기위하여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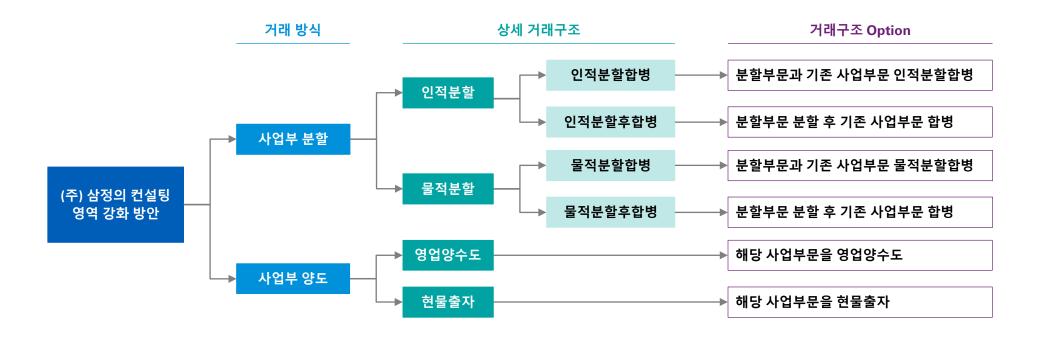
사업재편 사례 개괄 및 가능 Option 도출

모든 방안을 열거하여 사업재편 구조를 도출하는게 Key-Point!

사업 재편 사례 개괄/ Option 도출

사례 개괄

- 상장사인 (주) 삼정의 컨설팅 사업부를 비상장 자회사인 (주) 삼정컨설팅에 이양하여 기능 강화를 실시할 계획임.



최적 구조 선택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

경제적 효과, 사업적 효과, 절차적 이슈등을 고려한 최적 구조 선택

Key Consideration

7 경제적 효과1. 주주간 부의 이동

주주의 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가치 및 이에 따른 합병비율 및 양수도가액임. • 각 상황 별 평가 방법이

상이

2)

경제적 효과2. Tax Issue

분할 및 합병과정에서 Tax Issue 발생

•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한 세무 Issue 발생 가능 거래구조별 상증세법, 법인세법 등 세무 검토 3 사업적 효과- 외부주주와의 논의

> 본 거래로 인하여 사업적 효과를 달성해야 하며 외부주주에 대한 설득이 가능해야 함

• 본 거래로 인한 손해 또는 특정 특수관계인의 부당이득 발생 시 업무상 배임 등 법무 Issue 발생 가능 4)

절차적 이슈

본 거래를 진행하는데 있어, 절차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면 안됨.

- 주식매수청구권
 - 거래절차
 - 공시여부
- 지주회사 행위제한 이슈 등

<u>최적 대안 선택</u>

경제적 효과 분석 ① 평가방법: 합병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실질가치를 고려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

평가방법 관련 규정 및 판례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2. 6. 29., 2013. 6. 21., 2013. 8. 27., 2014. 12. 9.>

-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관련 판례

대전고법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사업재편 사례 연습

경제적 효과 분석 ① 평가방법: 논란 사례

합병비율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주주들은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서는 법적 분쟁 가능

유관 사례



합병 비율 논란 Case 1.

현대글로비스 – 모비스:

- 합병비율 (모비스 1 : 글로비스 0.6148203) 산정은 상장사인 글로비스는 기준주가를, 비상장사인 모비스 분할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를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모비스 분할법인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 제기
-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글로비스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되면 모비스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본다고 지적
- 현대 모비스의 외국인 주주 비중 48% → 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ISS / 글래스루이스)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합병 철회

2

합병 비율 논란 Case 2.

삼성물산 – 제일모직:

- 금융투자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비율로서, 합병비율 (제일모직 1 : 삼성물산 0.3500885) 책정. 이 같은 합병 계획이 발표되자 구 삼성물산 3대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비롯해 일성신약 등 소액 주주 일부가 거세게 반발. 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ISS) 합병 반대 권고.
- 2014년 기준으로 구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5배 이상), 영업익(3배 이상), 자산(3배 이상) 모두 우위 / 삼성물산 주가가 일부러 낮게 관리됐다는 의혹도 추가적으로 제기 (삼성물산의 의도적인 소극적 경영 및 삼성물산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
- KCC의 백기사 역할 및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에도 소액주주들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 관련 법정 분쟁 발생



합병 비율 논란 Case 3.

SK브로드밴드 - CJ헬로비전:

-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은 1:0.4761236에 책정. 하지만*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CJ헬로비전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 또한, CJ헬로비전의 주주인 KT직원 A씨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
- 마지막으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모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을 불허

Source: 언론보도



경제적 효과 분석 ② Tax Issue

승계자산 양도차익, 개별 주주들의 과세요건 파악은 선결.

적격분할 요건의 경	5 ~	적격합병 요건의 경	<u> </u>
적격분할 주요 요건		적격합병 사전요건	
사업영위 기간	■ 5년 이상의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분할		■ 1년 이상 사업영위 국내법인 간의 합병 - 단, 분할신설법인이 1년 이내에 피합병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 분리	■ 분리하여 영위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	사업영위 기간	- 전, 문을전을답전에 1한 어디에 되답당되는 당수 분할되기 전의 분할법인 내 사업기간을 통산함(적 격분할의 경우에만 해당함)
자산 · 부채 포괄승계	I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기타 주요요건	■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의 연속성 등
분할법인 단독출자	■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	적격합병 사후요건	
지분의 연속성	■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며, 분할법인 주주에 배정	지분의 연속성	■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2년 이상 합병법인 지분 보유
사업의 계속성	■ 분할등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 영위	사업의 계속성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승계 사업 2년 이상 영위
고용의 연속성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고용계약 유지	고용의 연속성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계약 3년 이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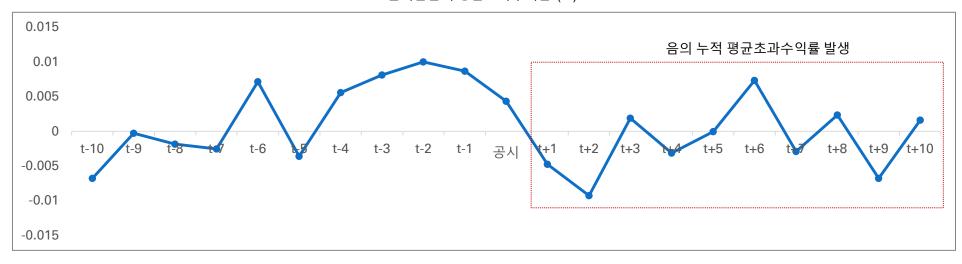
사업재편 사례 연습 Strictly Private & Confidential

사업적 효과 분석 ① 외부주주와의 Communication

주가 방어를 위해서는 적절한 IR이 필요!

물적분할과 주가의 상관관계

물적분할의 평균초과수익률1(%)



- Point 1. 공시일 이후 기간에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Δ3.52%)의 누적 평균초과수익률이 발생 하여 공시 일을 기준으로 공시 효과가 나타났다가 이를 상쇄 하는 주가반응이 나타남. 즉, 물적분할이라는 행위는 어떠한 기업가치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주가변동을 일으킴.
- Point 2. 물적분할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 및 내용에 변동이 없고, 분할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등 주주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공시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함.
- Point 3. 주가 방어를 위해서는 물적분할 후 추가적인 외부 투자, 합병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IR을 할 필요가 있음.

1) 한국상장사협의회, '분할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2003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된 전체 분할된 기업을 모집단으로 분석 실시), 평균초과수익률이라고 함은 시장 수익률 대비 해당 기업의 수익률을 의미함.



사업적 효과 분석 ① 외부주주와의 Communication

사전 IR에 대하여 고려

주요 Communication 사례



물적분할 및 합병에 대한 Communication 사례

물적분할의 목적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수익성 강화임.

-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규 성장사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 및 수익성 강화로 주주가치를 극대화.
- 경영지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책임경영체계를 확립,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
- 회사의 분할로 더욱 명확해진 기업이미지를 통해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 사업에만 재투자할 수 있어 사업의 집중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을 확보
- 전문성을 특화하고 그 특수성에 적합한 기동성 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

합병의 목적은 '사업적인 시너지' 및 '경영상의 효율성' 임.

• 사업의 시너지 창출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물적분할 후 합병의 Communication 사례

사례1. SK 텔레콤의 SK플래닛 분할 및 에스케이테크엑스와 합병 2018년 6월 19일 분할 및 합병에 대한 동시 이사회 결의 및 외부 공시함.

사례2. 신세계와 이마트의 온라인사업부문 물적분할 후 합병 및 FI 투자 2018년 1월 26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FI와 (Non Binding)MOU를 체결한 내용을 자율공시함.

사례3. 비츠로테크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간 합병 2017년 6월 30일 비츠로테크의 비츠로이엠 물적분할 공시(당시 합병 공시는 수행하지 않음) 2017년 7월 30일 자회사간 합병 공시

사례4. 한화 S&C의 분할 후 지분매각, 한화시스템과 합병 2017년 10월 한화S&C의 물적분할 및 지분매각 공시(당시 합병에 대한 내용은 가능성에 대해서만 기사로 언급)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과 합병

Source: Dart, 언론보도



사업재편 사례 연습 Strictly Private & Confidential

사업적 효과 분석 ① 외부주주와의 Communication

배임이슈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

주요 배임 판결 사례

사례 1. SK의 주식교환

- 개요: SK㈜의 보통주와 주식회사 워커힐의
 보통주의 주식교환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판결
- 평가방법: SK㈜는 시가, 주식회사 워커힐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
- 판결사유: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구하고, 해당 평가방법을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SK㈜에 손해를 발생시킴

사례 2.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 개요: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의 전환사채 발행·인수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
- 평가방법: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
- 판결사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함(2001도3191)

사례 3. 새롬방송 주식의 매수

- 개요: 대주주가 소유한 회사를 매입한 행위는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
- 평가방법: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
- 판결사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되 당시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2005도856)

- 우선순위 1.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 인정
- 우선순위 2.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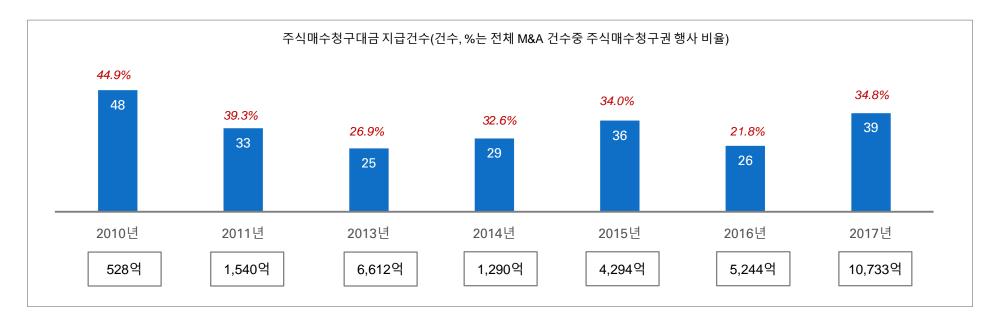
Source: Dart, 언론보도



절차적 이슈 ①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비율은 평균 33% 수준

연도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 Point 1. 과거 8년간 M&A 발생 건수(상장사) 중 약 33%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017년 롯데 지주사의 오너 지분율 강화 인식으로 인하여 롯데쇼핑 합병시 대량의 주식매수 청구 발생 , 롯데쇼핑건을 제외하고는 타사의 청구금액은 크지 않음.
- Point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각 대상회사의 M&A 특성, 주가 흐름에 따라 반응하며, 연도별 증가/감소 추세를 보이지는 않음. 즉, 주식매수청구 행사의 결정요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Source: '합병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정요인과 장기성과(2013)'



절차적 이슈 ① 주식매수청구권

1) 매수청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차익의 크기와 2) 합병가치의 과대평가 여부에 따라 주매청 행사가 결정

연도별 주식매수청구대금 행사 현황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현황(주식수기준)

	회사수			반대의사표시율(%)			주식매수청구비율(%)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2005년	20	65	85	10.06	13.29	12.66	0.63	2.12	1.78
2006년	21	56	77	14.4	16.91	16.23	4.04	4.7	4.52
2007년	17	50	67	9.16	16.21	14.42	1.05	3.85	3.14
2008년	19	60	79	17.74	17.31	17.41	8	5.88	6.39
2009년	25	43	68	10.68	11.08	10.93	4.26	1.58	2.56
2010년	17	36	53	5.96	11.59	9.82	0.84	2.11	1.71
계	119	310	429	11.47	14.68	13.79	3.26	3.51	3.44

결정 요인 1. 매수청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차익의 크기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수청구 가격 결정방법: 1순위) 상호 협의, 2순위) Average(1주일, 1개월, 2개월 가중산술평균), 3순위) 법원의 매수가격 결정

즉, 매수청구 종료시점까지 주가가 매수청구가격보다 높은 경우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매수청구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함.

결정 요인 2. 합병가치의 과대평가 여부

상장사인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비상장사인 합병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 하는 경우 매수청구 행사 비율이 급증함. 또한, 합병 시너지가 낮다고 평가되거나, 합병의 목적이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로 인식되는 경우 매수청구 행사 비율이 급증함.

사례 1) 대우와 미래에셋 증권의 합병(합병 시너지 낮다고 해석): 56,645 백만원 매수청구

사례 2)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의 합병(최대주주 지배력 강화 해석): 롯데쇼핑 577,759 백만원 매수청구

Source: '합병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정요인과 장기성과(2013)'



절차적 이슈 ①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가능.

합병가액과 매수청구가격

일자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관자여부	매수청구 주당 가격 _	합병/파	괴리율	
르시	8085	48985	국민시어구	MT3T T3 /14 -	합병가액	산정방법	- 피니크
2020-01-02	끄렘드라끄렘	선산	O	56	48	상증세법	16.6%
2020-01-07	동부제5호기업인수	레이크머티리얼즈	X	2,067	2,000	기준시가	3.4%
2020-01-07	동부제5호기업인수	레이크머티리얼즈	X	2,067	2,000	기준시가	3.4%
2020-01-15	바른손	졸스	O	2,012	1,791	기준시가	12.3%
2020-01-21	씨에스에이코스믹		O	881	881	본질가치법	0.0%
2020-02-06	에스케이브로드벤	티브로드	X	20,246	20,458	수익가치법	1.0%
2020-02-28	KG모빌리언스	KG올앳	0	6,022	5,959	기준시가	1.1%
2020-03-27	삼호	고려개발주식회사	0	12,688	12,078	기준시가	5.1%
2020-03-27	삼호	고려개발주식회사	0	5,749	5,455	기준시가	5.4%
2020-03-27	하나금융11호기업		X	2,055	2,000	기준시가	2.8%
2020-03-27	하나금융11호기업	카이노스메드	X	13,800	13,800	본질가치법	0.0%
2020-04-10	인터파크홀딩스	인터파크	0	1,317	1,253	기준시가	5.1%
2020-04-10	인터파크홀딩스	인터파크	0	3,237	3,086	기준시가	4.9%
2020-04-10	하나금융9호기업인		X	2,080	2,000	기준시가	4.9% 4.0%
2020-05-04	해성산업	한국제지	0	7,689	7,604	기준시가	1.1%
2020-05-04	해성산업	한국제지	0	13,263	12,670	기준시가	4.7%
2020-05-19	하나금융13호	윈텍	X	2,017	2,000	기준시가	0.8% 3.8%
2020-05-20	엔에이치스팩12호	와이즈버즈	X	2,075	2,000	기준시가	3.8%
2020-06-05		에이치엘케이홀딩스	0	83,859	85,787	기준시가	2.2%
2020-06-09		더블유에스아이	X	2,018	2,000	기준시가	0.9%
2020-06-15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0	27,791	29,106	기준시가	4.5%
2020-06-15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0	62,144	62,144	본질가치법	0.0%
2020-06-22	조인트리	씨큐림	X	590	590	상증세법	0.0%
2020-07-08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0	2,116	1,991	기준시가	6.3%
2020-07-08		에이프로젠	0	32,248	32,248	본질가치법	0.0%
2020-07-08	에이프로젠 H&G	에이프로젠 KIC	0	672	676	기준시가	0.6%
2020-07-15	IBKS제14호	엑스게이트	X	2,008	2,000	기준시가	0.4%
2020-07-16	IBKS제11호	비올	X	2,025	2,000	기준시가	1.3%



사업재편 사례 검토 결과

본 사례에서는 물적 분할 후 합병을 이용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됨.

방안별 검토 결과

구분	거래주체별 주요 고려사항								
	거:	매주체	과세항목	거래절차	주식매수 청구권	평가방법	공시여부	검토결과	
물적분할합병	삼정		없음* (적격분할합병)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생	본질가치법	외부평가의견서 공시필요	상장사인 의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삼정	!컨설팅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생	본질가치법	외부평가의견서 공시필요	본 거래의 무산 Risk가 존재함	
물적분할 후 합병	분할시	삼정	없음* (적격분할)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음	제한없음	없음		
		분할법인	 없음	없음	없음	제한없음	 없음	물적분할 및 합병의 거래 단계에 따라 타 방안 대비 거래기간이 긴 편이나, Tax Risk 및 거래 용이성이 우수함	
	합병시	분할법인	없음 (적격합병)	이사회승인 (간이합병)	없음	제한없음	없음		
		삼정컨설팅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생	제한없음	없음	-	
영업양수도	삼정		법인세 (양도차익 발생)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생	제한없음	외부평가의견서 공시필요	상장사인 삼정의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삼정컨설팅		없음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생	제한없음	외부평가의견서 공시필요	본 거래의 무산 Risk가 존재함	
 현물출자	 삼정		법인세 (양도차익 발생)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생	제한없음	외부평가의견서 공시필요	상장사인 삼정의 반대주주에 대한	
	삼정	!컨설팅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생	제한없음	외부평가의견서 공시필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본 거래의 무산 Risk가 존재함	

[참고] 분할합병 사례

과거 10년(2008~2018) 간 공시된 분할합병 건수는 총 50건이었고, 이중 물적분할합병은 총 5건 (1건:합병 철회, 2건: 모든 주주 동의로 인한 주식매수청구권 미발생, 2건: 주식매수청구권발생) 이었음.

분할합병 사례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합병방식	합병비율	합병기일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인적분할합병	1:0.1764781	2018.12.01
네이버웹툰	네이버	물적분할합병	1:0.0012108	철회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인적분할합병	1:0.6148203	철회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인적분할합병	1:0.5094726	2018.06.05
한국도서보급	티시스	인적분할합병	1:3.7018812	2018.04.01
롯데지주	롯데 지알에스	인적분할합병	1:11.0504629	2018.04.01
동성코퍼레이션	동성티씨에스	인적분할합병	1:0.0000000	2018.04.01
포스코피엔에스	포스코대우	인적분할합병	1:0.4387662	2017.03.01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인적분할합병	1:0.0434975	2016.09.01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큐셀	물적분할합병	-	2016.05.31
SK텔레콤	SK 플래닛	인적분할합병	1:0.0000000	2016.04.05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호핀 사업부문)	인적분할합병	1:0.0349186	2015.09.01
하남에너지서비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인적분할합병	1:0	2015.08.01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인적분할합병	1:0	2014.07.01
케이티	케이티케피탈	인적분할합병	1:0.1371634	2014.03.01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인적분할합병	1:0.3894677	2013.12.31
지에스이엠	삼일폴리머	인적분할합병	1:0.0483370	2013.10.01
두산	엔셰이퍼 (업무대행업 부문)	인적분할합병	1:0	2013.09.01
에이치에스애드	엘베스트	인적분할합병	1:0.3669305	2013.04.01
씨제이푸드빌	씨제이엔시티	인적분할합병	1:1.4925373	2013.07.01
엠앤서비스	SK마케팅앤컴퍼니	물적분할합병	-	2013.02.01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신용조회사업부문	한국신용정보(주) 신용조회사업부문	인적분할합병	1:0.6836494	2010.11.01
케이티렌탈 오토사업부문	금호렌터카 (렌터카사업부문)	인적분할합병	1:0.4186867	2010.05.31
에이스테크놀로지 투자사업부문	에이스안테나 투자사업부문	인적분할합병	1:3.7949754	2010.03.01
굿센 대웅	플렉스컴 대웅바이오 (투자부문)	물적분할합병 물적분할합병	1:0.8555398 1:1.1964906	2009.03.31 2009.03.31

과거 10년간 공시된 분할합병 건수

50건

주식매수청구권 존재

27건

물적분할합병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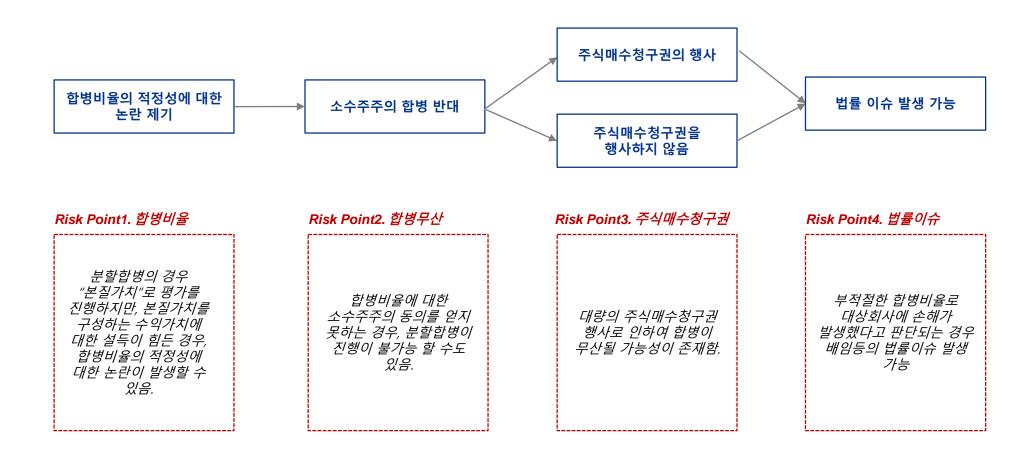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는 물적분할합병

2건

[참고] 분할합병 Risk 식별

Risk에 대한 사전 검토 반드시 수행!

분할합병 Risk 식별



연습문제 (1)

- 1. 아래사례에서 합병 비율 산정 방법은?
 - 1) 상장사 A사와 비상장사 B사(특수관계 有)
 - 2) 비상장사 A사와 비상장사 B사(특수관계 有)

- 2. 다음중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 1) 소규모 합병
 - 2) 분할합병
 - 3) 물적분할

지배력 강화 사례 개괄

모든 방안을 열거하여 사업재편 구조를 도출하는게 Key-Point!

사업 재편 사례 개괄/ Option 도출

사례 개괄

- 상장사인 (주) 삼정은 비상장 자회사인 (주) 삼정컨설팅에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함.

Option 도출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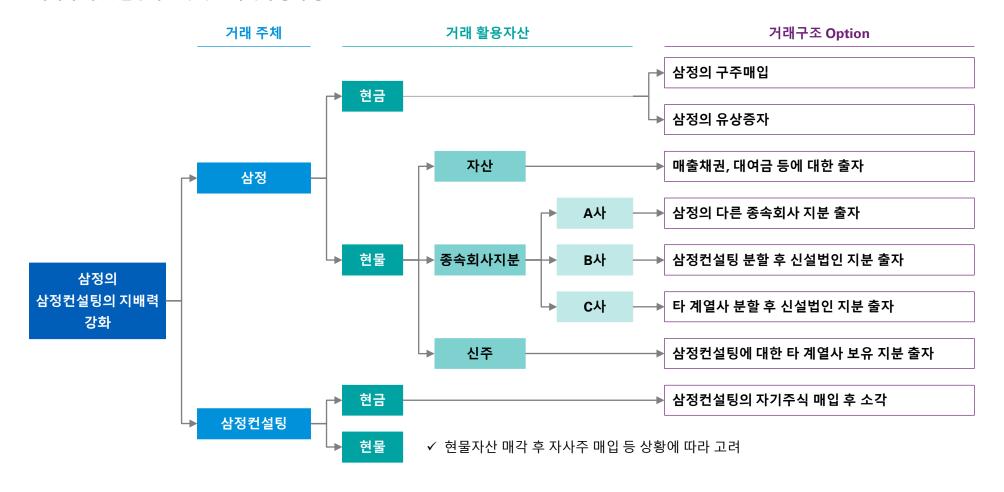
거래 주체 거래 활용 자산 거래 방식

- 모회사 및 자회사 중 어떠한 회사를 거래주체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거래 효과가 상이
- 현금, 현물자산, 지분, 사업부 등 어떠한 자산을 거래로 활용할 지에 따라 거래 효과가 상이
- 주식매입, 현물출자, 분할합병 등 어떠한 거래방식을 사용하는 지에 따라 거래효과 상이

거래구조 도출

가능한 거래 구조를 모두 도출하는게 핵심!

거래 주체 및 활용자산에 따른 지배력 강화 방안 도출



지주회사 설립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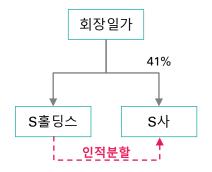
인적분할-현물출자를 통한 지배력 강화

지주회사 체재 전환 일반적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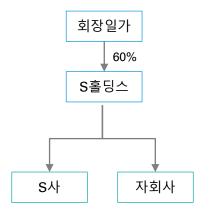
당초 지분

회장일가 41% S사 100% 자회사

사업법인 인적분할



현물출자(+공개매수)



- 핵심 S사의 낮은 지분율로 고민인 회장일가
-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력 추가 확보 결정
- 장부가액 기준으로 인적분할
- 인적분할 전 S홀딩스는 자사주를 최대한 보유하여 공정거래법 지주사 요건 충족
- 회장일가는 보유하고 있는 S사 지분을 S 홀딩스에 현물출자(신주 3자배정 유상증자)
- S사 지분의 공개매수도 병행하여 최대한의 지분 확보

[참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 체재 전환 시 행위제한 필수 고려

지주회사 체재 전환 일반적인 구조

부채비율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자회사 주식비율

• 비상장 자회사 40% 이상 보유, 상장자회사 20% 이상 보유(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및 지분율이 30% 미만이더라도, 임원의 50%이상을 점유하거나, 회사를 실질 지배하는 경우 기업집단 회사에 포함됨.)

투자목적/자 회사외 주식보유

• 국내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단, 그 가액이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일 경우 예외)

손자회사 주식 비율

• 비상장 손자회사 40% 이상 보유, 상장손자회사 20% 이상 보유

금융회사 소유금지

• 일반지주회사/일반지주자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증손자회사 주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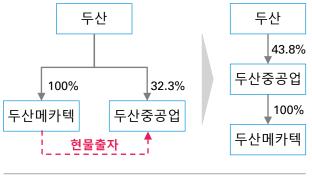
• 증손자회사 100% 보유

[참고] 주요 대기업의 거래사례

국내 주요 대기업은 계열사 간 사업적 시너지 창출 및 지주회사(또는 Owner)의 핵심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계열사 지분의 현물출자를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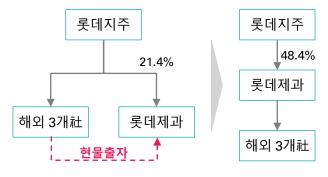
두산의 두산메카텍 지분 두산중공업 출자



납입일	2020년 2월 5일
출자대상회사	두산메카텍
출자대상지분	100%, 2,382억원
지분확보효과	+11.5%p

■ 두산메카텍의 두산중공업 자회사 편입을 위한 현물출자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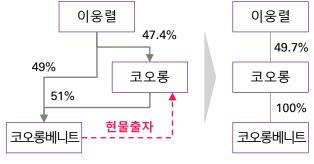
롯데지주의 해외계열사 지분 롯데제과 출자



납입일	2018년 12월 20일
출자대상회사	해외계열사 3개社
출자대상지분	- Rakhat : 92.4%, 2,026억원 - Kolson : 96.5%, 1,045억원 - Lotte Europe : 51%, 415억원
지부확보효과	+27.0%p

- 롯데 해외계열사 3개社의 롯데제과 자회사 편입을 통한 롯데제과 지배력 강화를 위한 거래
- 대상회사 3개社의 지분가치가 롯데제과의 연결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평가보고서 공시

이응렬 회장의 코오롱베니트 지분 코오롱 출자



납입일	2018년 9월 20일
출자대상회사	코오롱베니트
출자대상지분	49%, 211억원
지분확보효과	+2.3%p

코오롱베니트의 코오롱 완전 자회사化를 위한 현물출자 거래

Source: DART, 국내 주요 언론보도.

[참고] 현물출자 - 거래절차 및 일정

현물출자는 이사회로부터 약 45일 정도 소요됨.

현물출자 거래절차 및 일정(法務法人案)

일정	절차	주체	상세사항
	사전절차		■ 현물출자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및 공시 관련 자료 준비 ■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감정평가 수행
	이사회 결의	신주발행법인, 현물재 산 보유회사	■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이 배제되어, 이사 전원 찬성 필요
D-Day	현물출자계약 체결	신주발행법인, 현물재 산 보유회사	■ 현물출자계약 체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공시·공고	신주발행법인	■ 현물출자 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외부평가보고서 공시 필요
D+1	현물출자조사보고서 법원 제출	신주발행법인	■ 감정보고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현물출자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 제출
D : 42	주주총회 결의	신주발행법인	■ 정관개정 시 주주총회 의결 필요
D+43	법원 현물출자승인	신주발행법인	■ 법원 심사의 경우 통상 4 - 6주 소요
D+44	현물출자 이행 (납입일)	신주발행법인, 현물재 산 보유회사	■ 주식 현물출자 절차 이행 및 관련 서류수령
D. 45	신주발행 변경등기 및 상장 신청	시스만에면이	■ 변경등기 : 신주발행 효력 발생 2주 내 등기신청 ■ 추가상장 : 신주발행 효력 발생 후 지체 없이 신청
D+45	관련사항 공시		 신주발행법인 : 합병등종료보고,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신고 현물재산 보유회사 : 주식 보유상황 변동 보고

일감몰아주기 이슈

많은 그룹사는 일감몰아주기 이슈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 M&A 진행

이슈 개괄

- 1 [법률이슈] 공정거래법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함)이 단독으로 또는 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원칙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됨.
- [개정안] 기업 및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
- [법률이슈]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행위 금지"
- 사업자가 부당하게 (i)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소위 "통행세")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
- [조세이슈] 증여세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이익을 받은 회사의 주식을 3%이상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등은 증여세 과세

- [법률이슈] 법인세법 "특수관계회사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를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일감몰아주기 이슈

많은 그룹사는 일감몰아주기 이슈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 M&A 진행

회사명

지분구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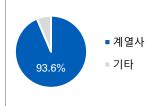
내부거래 비중(1)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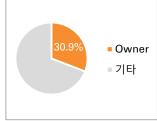
롯데정보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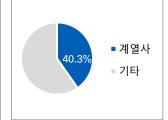




- 롯데정보통신의 경우 2017년 9월 투자부문인 "롯데아이티테크 (존속법인)"와 SI부문인 "롯데정보통신(신설법인)"의 **물적분할 후 IPO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Issue 해소함
 - ✓ 물적분할 후 Owner 일가 지분율 변화 : 24.77%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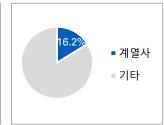




- SK C&C의 경우 2015년 8월 SK㈜ 흡수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으로 일감 몰아주기 Issue를 해소함
 - ✓ 지주회사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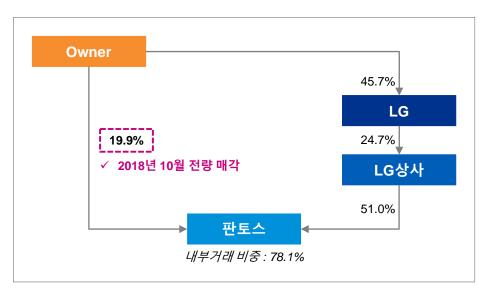


- 한화S&C의 경우 2017년 10월 투자부문인 "에이치솔루션(존속법인)"과 SI부문인 "한화S&C(신설법인)"의 **물적분할 후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Issue 해소함
 - ✓ 분할 신설 법인의 Owner 일가 지분율: 0%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Owner 일가 지분율: 0%

일감몰아주기 이슈: LG 그룹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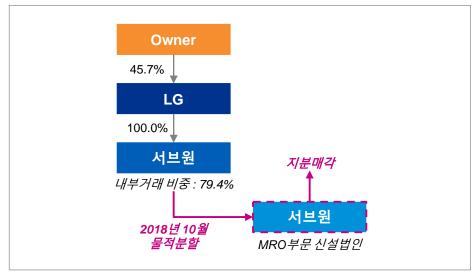
분할/매각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이슈 해소

판토스 지분구조 단순화



- 판토스의 경우 LG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이 78.1%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구광모 회장 등 Owner 일가의 지분율은 19.9%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었을 것으로 추정)
- LG그룹 Owner 일가는 상속세 재원 확보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2018년 10월 판토스 지분 19.9%를 전량 매각함

서브원 물적분할 후 지분매각



- 서브원의 경우 LG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이 79.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LG를 통한 Owner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님)
- LG그룹은 서브원을 "에스앤아이(존속법인)"와 "서브원(MRO부문 신설법인)"으로 2018년 10월 물적분할 후 현재 일감 몰아주기 Issue 해소를 위한 신설법인의 지분 매각



Contact us

김 양 태 부장

Deal Advisory V

Tel. 02 2112 7585

Mail. ykim32@kr.kpmg.com

kpmg.com/kr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